

# 「KDBpension 정기예금」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KDBpension 정기예금」(이하'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합니다.

# 제3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 제4조 계약기간

-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가입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또는 5년 중 택일하여야 하며, 가입 후에는 계약기간을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이하 "만기일지정식"이라 합니다.). 가입 후에는 계약기간을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5조 재예치

- 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만기일지정식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재예치기간을 1년인 계약으로 정합니다.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하지 않으며.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
- ③ 이 예금의 만기일을 재예치일로 하되,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만기일의 다음 영업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
- ④ 은행은 고객에게 재예치 됨을 설명하고, 고객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고객이 신청한 방법(SMS 또는 이메일)으로 통지합니다.

## 제6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이하 '예금일'이라 합니다.)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기일지정식의 경우 계약기간 내 포함되는 최장기 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예금을 만기일(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제7조 중도해지이자

- ①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중도인출사유로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한 때에는 예금일로부터 지



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기간별로 예금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다음의 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1.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 : 해당 계약기간별 만기 기본이율
- 2. 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계약
  - 가. 1년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1년 만기 기본이율
  - 나. 1년이상 예치시 : 이 예금의 해당 계약기간 만기 기본이율
- ③ 제2항의 중도인출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
  -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가입자 퇴직시 전직하는 회사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이전
  - 3. 연금지급을 위한 경우
  -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5.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6.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7.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탁업무 사임
  - 8. 계열사내 전직, 사업장간 인사이동 등을 통한 산업은행내 계약 이전
  - 9.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간 전환에 따른 인출
- 10.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
- 11.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소득세법 개정으로 퇴직소득세가 증가함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해지하는 경우
- 12.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제7조의 2 만기후 이율

이 예금을 만기일 후에 지급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다음 각 호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1. 만기후 1년 이내 : '일반정기예금(1년)' 기본이율의 1/2
- 2. 만기후 1년 초과 : 보통예금 이율

# 제8조 분할인출

- ① 이 예금은 만기인출을 포함하여 3회까지 분할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인출을 포함하여 3회까지 분할인출 할 수 있습니다.
-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분할인출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 1.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급여 지급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
  - 2. 가입자 퇴직시 전직하는 회사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제도로 이전
  - 3. 연금지급을 위한 경우
  -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5.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간 전환에 따른 인출
  - 6.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
- ③ 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분할인출하는 경우에는 분할인출 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7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분할인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제9조 제한사항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및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 제10조 통장발급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특약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1)

(시행일) 이 특약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

(시행일등) 이 특약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제5조는 기존고객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 부 칙(3)

(시행일 등) 이 특약은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이 예금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

## 부 칙(4)

(시행일 등) 이 특약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